

첨부 서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인가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1.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란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결의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합니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변경인가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인가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역·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	--	--------------

근거 법규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조합원 현황			* 해산인가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적격 여부	비고
			[]적 격 []부적격	
			[]적 격 []부적격	
			[]적 격 []부적격	
			[]적 격 []부적격	

처리 절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